

	교원양성위원회규정	규정번호	5-0-08
		제정일자	2010. 6. 1.
		개정일자	2024. 8. 1.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경민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21조에 의하여 우수한 예비교원의 양성을 위한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교직·전공) 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심의를 위해 「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에 의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교무학생처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위원 중 최소한 1명 이상의 외부인사 포함)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외부인사 위촉 시 해당 학과의 졸업생을 우선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4.8.1.)

② 위원장은 교무학생처장, 부위원장은 유아교육과 학과장으로 하되 임기는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9.1., 2019.8.1.)

1.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조교로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 (개정 2024.8.1.)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3.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의 개발·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사항

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실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1.)

3. 교원양성과정 강화 및 내실화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심의 시 재학생 의견 청취 및 반영 (신설 2024.8.1.)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6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